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7
----------	------

제출년월일 : 2005.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법 개정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함
- 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 다.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을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에서 “토지 또는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하여 주택관련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함(안 제3조)
- 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 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 공시”로 하고, 동항제6호중 “토지 또는 지가”를 “토지·주택 등에 관한”으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타 구청장이 부동산가격 공시 평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중 “인근 지가와”를 “인근 부동산가격과”로 하고, “지가심의”를 “부동산가격 심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u>	<u>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u> 규정에 의하여 <u>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u> ----- <u>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위원은 <u>지가공시</u>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 <u>부동산가격 공시</u> ----- ----- -----
1.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u>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u> 조교수 이상인자 7. <u>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u> 구청장이 <u>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u> 에 <u>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u>	1. ----- 2. ----- 3. ----- 4. ----- 5. ----- 6. <u>토지 · 주택 등에 관한</u> ----- 7. <u>기타 구청장이 부동산가격 공시 평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②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u>잔임기간으로 한다.</u>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u>인근 지가와</u>의 균형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u>지가심의</u>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u>공무원을 제외한 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 ----- ----- ----- <u>인근 부동산가격과</u> ----- ----- ----- <u>부동산가격 심의</u> ----- -----.